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 규정

개정 2009. 03. 24.
개정 2011. 08. 17.
개정 2013. 10. 08.
개정 2014. 04. 15.

제 1조 (명칭)

본 기금의 명칭은 대한간학회-해외연수기금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Academic Scholarship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라고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 기금은 간담도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Academic Scholarship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3조 (지원범위)

1) 본 기금은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을 지원한다.
2)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 수상자에게는 1인당 미화 최소 10,000불 이상, 최대 20,000불 이하로 지원한다. 수상자의 수는 매년 총 지원금이 미화 9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3) 해당 연도에 적절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 선정을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제 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대한간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 5조 (구비서류)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한 날까지 본 기금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평의원 추천서(소정양식)
2) 이력서
3) 연구업적목록
4) 연수계획서(소정양식)
5) 서약서(소정양식)
6) 기관장확인서 및 서약서(소정양식)
7) 연수기관 초청장 사본 1부
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 6조 (운영위원회)

1) 대한간학회에 본 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겸임한다.
3) 대한간학회의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 7조 (심사위원회)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한다.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에서 8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2)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 (해외연수기금 수상자 발표)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며 이 내용을 대한간학회지(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에 게재한다.

제 9조 (수상자의 의무)

1)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 수상자는 해외연수 종료 후 귀국 2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소정양식)를 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한간학회 해외연수기금 수상자는 해외연수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서 대한간학회지(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와 SCI 혹은 SCIE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각각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각각의 논문에는 본 기금의 지원을 받았음을 영문 또는 한글로 밝혀야 한다.
   * This research(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Research Fund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3)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수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